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검 토 보 고

〈지역재투자기금의 신설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96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구성 체계	5
2.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제정 필요성 검토	6
3. 주요내용별 검토	13
가. 기금의 설치 및 조성	13
나. 기금의 용도 및 지역계정의 구분	16
다. 기금의 운용·관리체계	19
라.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7.
3. 회 부 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은 지역채투자비율이 대부분 낮습니다. 지역 금융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의 요인입니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예금주가 있는 곳에 돈이 흐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각 지역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채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했습니다.

금융회사가 해당지역 저소득층, 여성 및 소기업 등 대출수요에 대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별검사인 지역채투자법 검사(CRA Examination)를 통해 CRA 준수사항을 평가합니다. 검사결과가 악화되면 인수합병이나 신규지점 개설 허가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줍

니다.

일회성 법제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CRA 준수사항 평가에도 여전히 차별적 대출관행이 지속되자 1994년에 지역개발금융기관법(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을 추가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1998년에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 CDFI Fund)을 설립했습니다. 낙후된 지역과 그 지역 저소득층에게 직접금융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 유도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평가결과를 금융회사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했습니다. 지역별편중 대출관행이 일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합니다. 미국처럼 단순히 평가제도만으로 금융회사의 적극적 지역재투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CDFI Fund와 같이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용·관리하고 지역재투자 활성화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직접자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부와 자본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재사용되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

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Ⅲ. 주요내용

가.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재투자기금의 설치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

다. 기금은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함(안 제5조).

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금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관리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금융위원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진흥원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체계

- 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채투자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의 저신용·저소득 서민, 사회적 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등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 장 구분 없이 10개의 조와 시행일(공포 후 1년)에 관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체계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채투자기금법안(제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제7조(지역계정의 구분)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9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지도·감독)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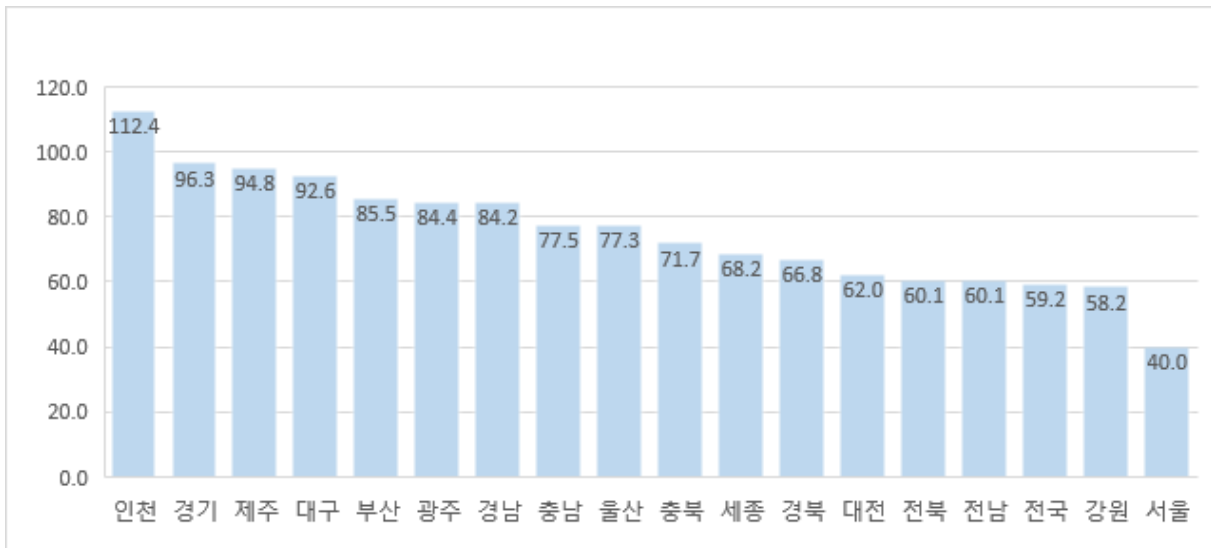
2.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제정 필요성 검토

□ 그동안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¹⁾.

○ 실제로 금융기관의 지역별 예대율을 살펴보면, 인천·경기 외 대부분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자금이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기보다는 금융기관에 축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2024 기준, 예금 취급기관의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

(단위: %)



주: 서울은 대기업·부유층 등 자금이 집중되어 수신(예금)이 여신(대출)보다 크게 나타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재구성)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2018. 10. 29.

○ 또한, 2023년 기준, 전국 지역내총생산(GDPR)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47.7% 수준²⁾이나, 예금취급기관의 총여신 대비 지방여신의 비중은 37.4% 수준³⁾으로, 지방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현재의 지역자금공급체계를 살펴보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24년말 기준 보증잔액의 47.2%(약 29.5조원)를 비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단위: 억원)

지역	보증잔액	지역	보증잔액	지역	보증잔액	지역	보증잔액
강원	11,589.5	광주	15,642.7	서울	126,997.0	전북	18,034.9
경기	171,837.0	대구	31,916.4	울산	11,709.1	제주	4,864.6
경남	43,227.6	대전	13,370.9	인천	31,388.7	충남	26,399.5
경북	37,363.7	부산	43,555.3	전남	18,118.6	충북	18,958.0

주: 보증잔액 총액은 약 62.5조원

(자료: 2024 신용보증기금 연차보고서)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2)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 비중(%): $1,146\text{조원} / 2,404\text{조원} \times 100$ [통계청, 2023년 지역소득(잠정), 2024. 12. 20.]

3) 이병윤, 지방소멸과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24. 12.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지역별로 설립⁴⁾되어, 정부·지자체·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증잔액의 56.9%(약 24.3조원)를 비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역별 보증잔액(2024년 기준)>

(단위: 억원)

지역	보증잔액	지역	보증잔액	지역	보증잔액	지역	보증잔액
강원	17,806	대구	28,614	울산	8,534	충남	27,150
경기	83,147	대전	17,324	인천	20,102	충북	12,525
경남	24,313	부산	29,512	전남	11,394	합계액	427,154
경북	24,484	서울	80,859	전북	16,821		
광주	11,322	세종	3,119	제주	10,050		

주: 세종신용보증재단은 2022년 2월 보증업무 개시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4 연차보고서)

- 그 외에 한국은행은 총 5.9조원을 한도로 은행에 저금리(연 1.0%) 자금을 공급하여 지방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72%(4.2조원)가 비수도권에 배정됨.

4)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2024년 기준)>

(단위: 억원)

지역본부	금액	지역본부	금액
경 기	10,013	충 북	1,737
대구경북	9,096	울 산	1,649
부 산	7,579	포 향	1,165
인 천	6,644	제 주	992
경 남	5,894	강 릉	973
대전충남	4,865	목 포	922
광주전남	4,279	강 원	874
전 북	2,318	합 계	59,000

주: 한국은행은 매년 한도 수준으로 대출을 공급하므로, 한도와 지역별 대출 공급액은 일치함.

(자료: 한국은행 제출 자료)

- 또한,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예금·적금 등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실시되고 있음.

< 지역금융 관련 제도 >

구분	지역금융 관련 제도
은행	○ 5개 지방은행(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은행)은 해당 지역 위주로 영업 * 대구은행은 2024년 시중은행으로 전환 * 지방은행: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
	○ 원화대출 증가액의 50%를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하도록 노력 *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제8호
저축은행	○ 전체 신용공여액 중 일정비율(서울과 경기도는 50%, 기타지역은 40%) 이상 해당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게 대출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⁵⁾

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지역에서 예금·적금 등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⁶⁾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⁷⁾를 부여하는 제도임.

□ 이와 같은 각종 지원 및 제도를 통해 지역별 편중 대출 관행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됨⁸⁾. 이에 제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서민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지역개발금융기관법」을 제정하여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을 마련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였음.

-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정부 기금으로, 저소득층 및 금융 소외 지역의 경제적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개발

1. 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는 유지비율 산정 시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구역 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이하 생략)

6)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제외

7)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

8) 이병윤, 지방소멸과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24. 12.

대전일보, 수도권 금융 자원 쏠림 심각...충청은 '수요대비 공급' 전국 최하, 2025. 1. 14.

(<https://v.daum.net/v/20250114185054652>)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금 지원 프로그램임. 이 기금은 주류 금융 기관이 잘 다루지 않는 저소득층, 소외 지역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자본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가진 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에 자금을 지원함.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 개요>

- 목적: 투자에서 소외된 지역사회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커뮤니티에 금융자원과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도모
- 지원 대상: CDFI로 인증받은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주1)}
(커뮤니티 개발은행, 신용조합, 대출펀드, 벤처캐피탈 등).
- 자금 조달: 연방 기금 외에도 민간기업, 개인, 재단 등 다양한 민간자본 유치
- 지원 방식: 연방 정부의 자금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대출·투자·기술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자금 공급
- 활동 예시: 중소기업 대출, 저렴한 주택 공급 자금, 비영리단체 지원, 금융 교육 및 컨설팅 등
- 사회적 효과: 일자리 창출, 주택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변화

주1) CDFI 펀드가 CDFI 기관을 인증하고, 경쟁을 통해 자금을 배분

□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자금공급체계를 보완하여 원활한 자금 공급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의 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며, 칸막이식 운용에 따라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⁹⁾, 기존 지역자금공급체계와의 중복성 여부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

9) 이러한 이유로 「국가재정법」은 기금 신설시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

□ 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정부·금융기관 출연을 통해 지역 내 자금을 공급하는 서민·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이미 다수 마련되어 있어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에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정책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며, 금융회사도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는 것임.

○ 특히,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기금의 사용 목적이 유사¹⁰⁾하므로,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별 검토

가.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정안은 지역재투자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지역재투자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금융회사의 출연금 4. 기부금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다른 기금,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안 제3조는 지역재투자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재투자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재투자기금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 보임.

- 「국가재정법」 11)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동 개정안과 함께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안 제8조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제2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은행이 이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상당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어 유사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의 의견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1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은행권의 보증기관 등에 대한 2024년 출연금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출연금	3,026
	특별출연금	4,450
	소계	7,476
신용보증기금	법정출연금	12,286
	특별출연금	2,386
	소계	14,672
기술보증기금	법정출연금	7,111
	특별출연금	683
	소계	7,794
서민금융진흥원	법정출연금	1,291
	특별출연금	3,204
	소계	4,495
총 계		34,437

주) 법정출연금 : 관련 법률에서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규정(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특별출연금 :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은행이 영업목적 등을 위해 보증기관에 자율적으로 납부

(자료: 은행연합회 제출자료)

나. 기금의 용도 및 지역계정의 구분

- 제정안은 기금을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및 이에 따른 보증 채무의 이행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안 제5조), 기금을 시·도별 지역계정으로 구분하되, 어느 하나의 지역계정에서 자금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지역계정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2. 제1호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지역채투자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u>기금을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계정의 재원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 제7조(지역계정의 구분) ① 기금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한다. 1. 서울지역계정 2. 부산지역계정 3. 대구지역계정 4. 인천지역계정 5. 광주지역계정 6. 대전지역계정 7. 울산지역계정

제 정 안

8. 강원지역계정
 9. 경기지역계정
 10. 충북지역계정
 11. 충남지역계정
 12. 전북지역계정
 13. 전남지역계정
 14. 경북지역계정
 15. 경남지역계정
 16. 제주지역계정
 17. 세종지역계정
 1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계정
- ② 제1항에 따른 어느 하나의 지역계정에서 자금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지역계정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할 수 있다.

□ 제정안은 기금을 각 지역별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기금을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계정의 재원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역 내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함.

○ 첫째, 제정안은 ‘지역계정의 재원’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내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계정의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역계정의 재원은 각 지역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규모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¹²⁾ 지역계정의 재원(기금수입의 배분 기준¹³⁾)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 아닌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역재투자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는 용도의 공통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1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계정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지방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함.

13) 기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므로, 이를 각 지역계정에 배분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계정의 재원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임.

다. 기금의 운용·관리체계

- 제정안은 지역채투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고(안 제7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하되, 업무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8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수탁자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 정 안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정의 자금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원장 5.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6.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8.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제 정 안

9.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10.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금융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진흥원은 기금의 회계를 진흥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금융위원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진흥원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은 같은 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¹⁴⁾,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안 제6조는 타당함

14)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금융기관¹⁵⁾ 중 특정 업권(은행,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자만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⁶⁾.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의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채투자기금법안」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금융회사의 출연금
4. 기부금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다른 기금,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 차.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카.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이 경우 각 금융기관의 출연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도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의 휴면
예금과 출연금 등을 출연받아 그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신용대출,
신용보증사업 등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
역재투자기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할 경우,
통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정안은 지역채투자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 이를 전액 적립하도록 하고, 손실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 지역채투자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안 제8조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서민금융진흥원을 기금의 이익금과 손실금 처리의 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104